

	<h1>윤리규정</h1>	문서번호 SEC-ETC-T-01
개정일: 2024-10-02		개정차수: 0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부 서	경영지원팀	경영지원팀	사장실
성 명	박정근 선임	최미영 책임	조명규 대표이사
서 명			
일 자	2024-09-10	2024-09-20	2024-10-02

개정 이력

차수	제(개)정 일자	시행일자	주요 개정 내용
0	2024-10-02	2024-10-02	초도 제정

	<h1>윤리규정</h1>	문서번호 SEC-ETC-T-01
개정일: 2024-10-02		개정차수: 0

1. 총칙

1.1 목적

본 규정은 신라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이하 "회사"라 한다.) 임원 및 직원에게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기준을 제공하여 청렴 하고 건전한 조직질서를 조성하고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적 가치판단 및 행동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용어 정의

본 규정에서 "윤리"란 행위의 옳고 그름과 선악을 구분하는 원칙이면서 행동의 기준이 되는 가치체계로 인간으로서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를 말한다.

1.3 적용 범위

본 규정은 본사 및 관계사에 근무하는 전 임직원 및 협력업체, 사내에 근무하는 협력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1.4 준수의무와 책임

- ① 모든 임직원은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 ② 대표이사, 부사장, 상무, 이사 및 팀장은 소속직원의 규정 준수 여부를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다.

2. 조직 및 교육

2.1 조직

- ① 회사는 윤리경영의 원활한 추진, 정착 및 윤리강령의 실천, 이행을 위하여 윤리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한다.
- ② 윤리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윤리경영 추진에 관한 주요 정책 결정
 2. 윤리경영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윤리경영 관련 중요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
 4. 윤리경영 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5. 윤리경영 관련 제안 및 신고센터 운영
 6. 위반행위 신고사항의 처리 및 위반자에 대한 처벌 요구
 7. 윤리경영 의문사항에 대한 상담, 자문 역할 수행
 8. 기타 윤리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2 교육 훈련

회사는 임직원이 윤리경영 내용을 이해하고, 업무관련 주요 법규와 준수사항을 숙지

	<h1>윤리규정</h1>	문서번호 SEC-ETC-T-01
개정일: 2024-10-02		개정차수: 0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임직원의 기본윤리

- ① 임직원은 신라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직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
- ② 임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회사의 명예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③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한다.
- ④ 임직원은 회사 자산을 유지 및 관리하고 업무와 관련된 보안, 비밀 사항의 유출을 금지한다.
- ⑤ 임직원은 관습이나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항상 새로운 사고로 문제해결에 능동적,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3.1 사명완수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이념과 비전을 공유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 공감하여 창의성,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성실히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한다. 아울러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글로벌 인재로 거듭나도록 꾸준히 노력한다.

3.2 공정한 직무 수행

- ⑥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⑦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 알선·청탁, 특혜부여 등 사회의 지탄을 받을 만한 비윤리적·불법적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⑧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어떠한 형태의 부당, 부정행위를 하지 않으며, 항상 상호간 예의를 갖춘다.
- ⑨ 임직원은 고객사나 이해관계에 있는 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향응제공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3.3 이해충돌회피

- ⑩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의 이해와 상충되는 행위나 이해관계를 회피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⑪ 임직원은 회사와 개인 또는 팀 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h1>윤리규정</h1>	문서번호 SEC-ETC-T-01
개정일: 2024-10-02		개정차수: 0

3.4 부당이득 수수 금지

⑫ 직무를 이용하여 회사 내부 및 외부의 이해관계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형태의 이익을 도모해서는 안된다.

1. 금전적 이익 : 금전 및 유가증권, 항공권, 숙박비, 선물 및 상품권, 부채에 대한 상환 및 보증 기타 현물화 가능 물품
2. 접대 :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접대
3. 이종취업 : 직원 또는 임원으로의 이종 취업
4. 자본적 수익의 취득 또는 보장 :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비공식적인 주식 등의 취득, 공동 투자 공동재산 취득
5. 편의 제공 : 편의수수, 임직원의 편의를 위한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수수 행위
6. 기타 : 상기에서 언급하지 않은 금품 수수 및 이에 준하는 행위

⑬ 우월적인 직위 또는 호의적인 관계를 이용하여 이해 관계자에게 다음의 행위를 요청해서는 안된다.

1. 사회적으로 지탄 받을 수 있는 청탁이나 압력
2. 사적인 부탁 및 의뢰(상품판매, 보험가입, 할인권 판매 등)

3.5 공*사구분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를 명확히 구분해야 하며, 근무시간 내 사적인 일에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② 임직원은 회사의 재산(업무용 차량, 각종 사업용·사무용 물품, 기타 동산 및 부동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회사의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해서는 안된다

3.6 사내 정보통신 활용

임직원은 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의 목적으로 사내 정보통신(인터넷)을 활용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1. 온라인 게임, 불건전한 채팅 및 도박, 음란물 사이트 접속
2. 증권 관련 매수, 매도 거래 행위
3. 허가 받지 않은 IP 주소의 사용 및 도용, IP 사용권한의 무단양도 등 불법적 행위
4.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또는 컴퓨터 바이러스 등의 유포 등 전산망의 정상적 운용의 방해 행위
5. 회사관련 정보를 승인 없이 외부로 무단송출하거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h1 style="margin: 0;">윤리규정</h1>	문서번호 SEC-ETC-T-01
개정일: 2024-10-02		개정차수: 0

인터넷 사용 행위.

3.7 임직원 상호 관계

- ① 임직원은 상호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켜야 하며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등의 괴로움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② 임직원은 학벌·성별·종교·혈연·출신지역 등에 따른 파벌조성이나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된다.
- ③ 임직원 상호간에는 부당한 청탁이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선물제공 및 금전거래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④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해서는 안되며 하급자는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되 부당한 지시는 거절해야 한다.
- ⑤ 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3.8 투명한 정보 및 회계관리

- ①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취득·관리해야 하며, 회계기록 등의 정보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록·관리해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 취득정보를 대표이사 또는 소속 사업부서의 장의 사전 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해서는 안된다.
- ③ 임직원은 특정 개인이나 팀의 이익을 위해 허위 또는 과장보고를 하지 않으며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독점하지 않는다.
- ④ 회사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경영정보를 공시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인다.

3.9 위조부품 방지

- ① 임직원은 승인되지 않은 원재료 및 부품 등을 생산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되며, 위조된 원재료 및 부품 등을 사용, 판매해서는 안 된다.
- ② 임직원은 작업장 내에서 위조된 원재료 및 부품 등이 사용 또는 생산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이를 확인한 경우 정부 혹은 관련 규제기관 및 고객사에 즉각 통보해야 한다.
- ③ 임직원은 생산된 부품 및 원재료 등이 사업목적 또는 계약조건 등에 맞게 사용, 유통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3.10 수출제한 준수

- ① 임직원은 수출제한과 관련된 지역별 법률 및 국제적 규약을 준수해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수출제한, 경제 제재에 해당하는 국가, 지역 또는 개인과 거래해서는 안 된다.

	<h1>윤리규정</h1>	문서번호 SEC-ETC-T-01
개정일: 2024-10-02		개정차수: 0

- ③ 임직원은 수출제한, 경제 제재 관련 법률 및 규약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하며, 필요 시 고객사의 현황 파악 활동에 협조한다.

3.11 자금 세탁 방지

임직원은 고객, 파트너, 협력업체, 기타 기관 및 개인과의 관계에서 불법재산의 취득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및 탈세목적으로 재산의 취득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3.12 정보 보호

- ① 임직원은 고객사 및 거래업체의 영업비밀이나 보안을 요하는 정보를 무단 유출하지 않으며, 업무 수행 시 취득한 정보의 경우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보관 또는 사용하지 않는다.
- ② 임직원은 고객사 및 거래업체가 보유한 특허, 상표, 디자인, 소프트웨어 등과 같은 지적 재산을 침해하거나 불법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사업상 취득한 기술자료, 정보 및 지적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지적재산권이 침해받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기술 및 노하우의 이전은 해당 권리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③ 임직원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과 보유 및 이용 기간 등을 일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기업경영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개인정보의 취급 및 활용에 있어서 사업장이 소재한 현지 법규에 따라 전반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관리해야 한다.

3.12 형사사건 기소 사실 등의 자진신고

임직원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또는 금고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윤리규정 담당 팀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1.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2. 교통사고로 인한 경우

4 고객에 대한 윤리

4.1 고객존중

- ① 임직원은 고객이 우리의 존립 이유이자 목표라는 인식하에 항상 고객을 존중하고

	<h1>윤리규정</h1>	문서번호 SEC-ETC-T-01
개정일: 2024-10-02		개정차수: 0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을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 ② 임직원은 고객 발전이 회사의 발전이라는 인식하에 고객을 존중하며 고객이 필요로 하는 참된 가치를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4.2 고객만족

- ① 임직원은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부응하는 최고의 기술력을 확보하여 최상의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 ② 임직원은 고객의 의견과 제안사항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수용하며 고객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 하게 처리한다.

4.3 고객의 이익 보호

임직원은 고객의 기술, 지적 재산권, 영업비밀, 고객정보 등을 회사의 재산보다 더 소중하게 보호해야 한다.

5. 거래업체에 대한 윤리

5.1 거래법규 준수

임직원은 모든 상거래를 함에 있어서 해당 국가 및 지역의 제반법규를 준수하고 국내외 상거래 관습을 존중한다.

5.2 자유경쟁추구

- ① 임직원은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경쟁업체와는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정정당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추구한다.
- ② 회사는 우수한 상품과 높은 서비스의 질을 통한 더 나은 실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경쟁을 추구한다.

5.3 공정한 거래

- ① 임직원은 회사가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체결 등에 있어서 자격을 구비한 모든 개인 또는 단체 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 ② 임직원은 모든 거래가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수행하되 공개적이고 일상적인 업무 장소에서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한다.
- ③ 임직원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 ④ 임직원은 모든 거래 시에는 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준수한다.
- ⑤ 임직원은 상생을 바탕으로 하는 기술 및 경영협력등을 통해 거래선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적극 지원하고 창의와 혁신을 통해 창출되는 수익을 상호 공유한다.

	<h1 style="margin: 0;">윤리규정</h1>	문서번호 SEC-ETC-T-01
개정일: 2024-10-02		개정차수: 0

6. 임직원에 대한 윤리

6.1 임직원 존중

- ① 회사는 임직원에 대한 믿음과 애정을 가지고 임직원 개개인을 존엄한 인격체로 대하며, 임직원 개개인의 종교적·정치적 의사와 사생활을 존중한다.
- ② 회사는 임직원이 투철한 주인 의식을 바탕으로 일을 통해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말은바 최선을 다한다.

6.2 공정한 대우

- ① 회사는 교육, 승진 등에 있어서 임직원 개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업적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며, 성별·학력·연령·종교·출신지역·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 ② 회사는 회사가 정한 객관적 기준에 따라 평가함으로써 자기계발 의욕을 북돋우며, 정당하게 보상한다.

6.3 인재육성 및 창의성 촉진

- ① 회사는 임직원의 능력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하고, 임직원의 독창적이고 자율적인 사고와 행동을 촉진하기 위해 모든 임직원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 ② 임직원들이 불편한 사항 및 개선제안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각자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항상 의견을 수렴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